

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(보유자·보유단체·전승교육사)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| | 생년월일 (성별) | (남,여) |
| 주소 (연락처) | (우편주소) | | () |
| 종목명칭 | | 보유자· 보유단체· 전승교육사 | |
| 전수교육 입문일 | 년 월 일 | 전수교육 기간 | 년 월 일 ~ 년 월 일 |
| 통합플랫폼 전수교육 실적기간 | 년 월 일 ~ 년 월 일 | | |

「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위 전수자가
본 종목의 전수교육을 만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국가무형유산

보유자·보유단체·전승교육사

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※유의사항

-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·보유단체·전승교육사에게 직접 입문일 및 전수교육기간 (무형유산 전승지원 통합플랫폼 등록 전수교육 실적기간 포함)을 확인한 뒤, 보유자·보유단체·전승교육사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
- 시·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·도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이수자가 해당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에 응시할 때는 시·도무형유산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
- 2의 경우 국가유산청은 해당 시·도에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해당 시·도에서 이수자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응시자는 이수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